

(비공식 번역본)
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

제3/2563호

투자촉진방법

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종합안내사항 제2/2557호 투자촉진 정책과 규율의 내용은

국내에서 투자를 받는 산업의 큰 프로젝트를 빠르게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제16항, 18항, 31항, 35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 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림

1. 2019년 10월 2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제4/2562호 빠른 투자촉진법에 대한 내용을 취소
2. 모든 지방의 지역들을 투자촉진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
3. 조건
 - 3.1 A1, A2, A3에 해당되는 사업이어야 하며 항공운수업, 해상운송업 같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와 활동범주 2.17, 6.15, 6.16, 6.17과 7.24에 해당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이 이에 해당
 - 3.2 법인세 면제 포함 여러가지의 투자촉진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혜택을 합쳐 8년 이상 받지 않은 프로젝트여야 함
 - 3.3 토지와 순환자본을 포함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투자금이 있어야함
 - (1) 2020년 2월6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의 실제 투자금액이 5억바트 이상이거나
 - (2) 2020년 2월6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의 실제 투자금액이 10억바트 이상이어야 함
 - 3.4 기계품을 수입해오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하지 않는데 프로젝트 시행 개시일에 대한 시간 연장은 상황에 맞게 고려
4. 3번 항목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실행 조건을 정하며 법인세 50% 할인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5년동안 부여하며 이에 대한 날짜는 마지막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는 날로부터 계산

5. 이 안내사항은 2019년 1월2일이후부터 2020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투자촉진을 요청한 프로젝트에 한해 적용
6. 이 안내사항에 따라 투자촉진에 대한 추가 권리와 혜택 요청을 하려면 2022년 6월 마지막 날 까지 실제투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함

위와 같은 내용을 지금부터 적용

2020년 3월 11일 고시

General Prayut Chan-o-cha

(Prayut Chan-o-cha)

총리

투자촉진위원회장